

여수항·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

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-94호(2026.9.21. 개정, 2026.10.1. 시행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·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여수항·광양항의 수상구역"이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말한다.
2. "대형구조물"이란 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.
3. "속력"이란 대지(對地)속력(speed of the ground)을 말한다.
4. "위험화물운반선"이란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.
5. "야간"이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.
6. "우선피항선"이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여수항·광양항의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장 항법

제4조(항법)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여수항·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자동조타장치 사용이 금지되며, 특히 위험물 부두 앞면 해상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항할 것
2.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(예인선 및 결합선의 경우 피예인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)은 광양항 내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부터 광양항 삼남 제4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에서 선박 간 교차통행이 금지되며, 통항 방법은 별표 1을 따를 것
3. 여수항·광양항 수상구역 내에서 예·부선의 항행 방법은 별표 2를 따를 것
4.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항행 방법은 별표 3을 따를 것

제5조(속력 등의 제한)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 속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수항·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12노트 이하(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)
2.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 및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(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)

제6조(통항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(視界)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.

1.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
2. 공사작업선(예·부선)

② 여수항·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, 묘도대교, 돌산대교,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.

③ 여수항·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 제1항에 따라,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-1, D-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, 항만의 효율적 운영 또는 재난·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항 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적용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1.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
2.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선박
3.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

제3장 보칙

제8조(재검토기한)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 <제2023-17호, 2023.01.19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4-11호, 2024.02.11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6-94호, 2026.9.21.>
이 고시는 2026.10.1.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표도수도 내 교행금지 구간 및 통항방법(제4조제2호)

교행금지구간	통항방법	대상선박
GS칼텍스제품부두 동측끝단에서 삼남 제4번 등부표까지	작수시간: 입항 홀수시간: 출항	예부선 결합선을 포함한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길이 35미터 이상 선박

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수칙(제4조제3호)

구분	내용	적용구간
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·부선	-(적용) 선박블록 및 교량상판 등 대형구조물을 해상운송하는 예·부선 -(예항방법) ① 선미예인 1척과 접현식예인 1척을 사용하는 혼합형으로 예인해야 하며 예선마력 사용기준은 여수항·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준용한다. ② 예인용 줄의 길이는 총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한다. ③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의 협수로에서는 예인선·부선의 회전반경, 조류, 시계, 선체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성이 확보되는 방식(접현식 또는 선수예인)을 선택해야 하며, 운항 상황에 따라 선장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입출항해야 한다. -(속력 제한) ① 최소 6노트 이상의 속력을 유지하되, 해양사고 예방과 만곡부 등에서 부선을 용이하게 조종하기 위한 경우에는 감속할 수 있다. ②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의 등부표·만곡부 등 협소하거나 시야가 제한된 구간에서는 5노트 이하로 감속하여 항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.	광양항 항계 내

구분	내용	적용구간
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 · 부선	-(출항시간조정) ① 조석에 따른 조종능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조류(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)시에 출항해야 한다. ② 항로상에서 비상시 대응을 위하여 야간 출항을 금지한다. -(견시원배치) 피예인부선 또는 피예인물에 통신장비를 갖춘 견시원(경계 임무를 맡은 사람)을 배치해야 한다. -(항로교행금지) 율촌항로와 시멘트 부두 진입항로 및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에서 항행중인 다른 선박과 교차 항행은 금지한다. -(출항 통제) 기상특보 발효 또는 이와 동등한 해상 기상 상태에서는 출항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.	광양항 항계 내

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통항항법(제4조제4호)

구분	내용	적용구간
이 순 신 대 교	-이순신대교 하측 해역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교량등 녹등과 홍등 사이로 항행해야 한다.(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은 선박 및 우선피항선 제외) -적용구간 내 총톤수 50,000톤 이상의 선박은 상호 교행이 금지된다. -적용구간 내 항해하는 우선피항선은 가급적 부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행해야 한다. -적용구간 내 동측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은 출항 선박과 만날 때 상호 충분한 사전 교신 후 입항해야 한다. -적용구간 내 서측에서 동측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과 동측에서 서측으로 항행하는 선박과 만날 때 좌현 대 좌현으로 항행해야 한다. -K12·13정박지로부터 부두접안을 위하여 이동하는 선박은 적용구간 내에서 항행 중인 선박(우선피항선 제외)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.	광 양 항 제 13 호 등 부 표 ~ 이 순 신 대 교
묘 도 대 교	-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교량등 녹등과 홍등사이로 항행해야 한다. -묘도대교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각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.	목 도 ~ 소 당 도

[별표 4]

여수항 · 광양항 내 교량 제원(제6조제2항)

구분	이순신대교	묘도대교	돌산대교	거북선대교
항로폭(m)	950	300	120	120
형하고(m)	76.5	52	20	22

* 형하고(m): 약최고고조면에서 해상 교량의 항로폭 내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를 기준